

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류 안내

수급자격 인정요건	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■ 폐업 사유가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것 ■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폐업사유	☐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 ☐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 3개월 이내 폐업 ☐ 사유 종료(제대, 소집해제) 후 30일 이내 방문하여 신청
준비서류	☐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):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☐ 고용보험 상실처리(근로복지공단) ☐ 고용보험 완납증명서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, 무인민원발급기) ☐ 폐업 사유 확인 서류 ○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
☐ 수급기간 연기 ○ 바로 재취업(창업)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입대(소집) 기간은 연기 ○ 입대(소집) 전이나 제대(소집해제) 후 30일 이내 신청 ○ 준비서류: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	
※ 필요시, 추가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. ※ 진주고용센터 팩스: 0508-8230-0475  진주 고용복지+센터	